□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유형별 응시자격심사 제출서류 (ver.24.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응시자격심사 없이 시험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사람(재시험 접수자)

1. 제출 공통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클릭!
※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② 증명사진(3.5cm x 4.5cm)

2. 응시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추가 제출서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해당없음 (별도 심사없이 시험신청 가능)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1. 실무경력 증명서류 ※ 세부내용 [유형1] 참조 ☜클릭!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1. 자격 취득사실 증명서류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세부내용 [유형2] 참조 ☜클릭!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1. 선임자격 증명서류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세부내용 [유형3] 참조 ☜클릭!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1. 학력 증명서류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세부내용 [유형4] 참조 ☜클릭!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1. 학력 증명서류 - 졸업(또는 학위)증명서 ※ 세부내용 [유형5] 참조 ☜클릭!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특급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참조

[유형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사례1~3 중 택일)

(사례1) 선임 및 해임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클릭!

(사례2) 선임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클릭!

(사례3) 선임 및 해임사실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클릭!

[사례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선임 및 해임 사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소방관서에서 발급) **(권장)**
   ② 선·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③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명 필요)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증명서류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사례2]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선임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 (권장)
   ② 선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선임증으로 대체 가능
   ③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명 필요)

2.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중 택일)
   ①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류 [별지 2호] 서식 ☜클릭!
      * 공적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 이수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증명서류
   ※ 선임이력확인서 등 선임사실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별지 2호] 서식만 인정됨
2.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로 각각 제출해야함
3. 경력(재직)증명서의 대표자 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
   - 법인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동등한 성격의 대표
   -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을 위해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업체의 대표
   - 대상물의 권리가 분원되어 있어 1인의 대표로부터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객관적으로 대표 가능한 주체

※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건물주 본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건축물대장 등)

【실무경력 기간 산정 방법】
1. 경력기간 산정 시 경력 최소단위는 1개월로 적용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총 경력을 합산하여 잔여경력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
3.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 선임사실 증명서류에 기재된 선임일자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류에 의한 경력기간 종료일 까지 인정

※ 경력기간 종료일 산정 방법
1. **경력증명서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의 종료일 : **경력증명서 종료일 까지 인정**
2. 경력증명서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 종료일 까지 인정**

4. 실무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선임사실 증명서류에 기재된 선임일자부터 실무교육 이수일 까지 인정

[사례3]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선임 및 해임 사실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 자격증)

2.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류 [별지 2호] 서식 ☜클릭!
   * 공적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 이수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증명서류(①, ② 중 택일)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별지 2호] 서식만 인정됨
2.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로 각각 제출해야함
3. 경력(재직)증명서의 대표자 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
 - 법인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동등한 성격의 대표
 -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을 위해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업체의 대표
 - 대상물의 권리가 분원되어 있어 1인의 대표로부터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객관적으로 대표 가능한 주체

※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건물주 본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건축물대장 등)

【실무경력 기간 산정 방법】
1. 경력기간 산정 시 경력 최소단위는 1개월로 적용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총 경력을 합산하여 잔여경력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
3. 경력기간 범위 내 실무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여 실무경력 기간 산정
   ① 경력기간 범위 산정
   - 경력(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류에 의한 경력기간 범위 산정

※ 경력기간 범위 산정 방법
❶ 경력기간 시작일
1. 경력증명서의 시작일 ≦ **공적증명서류의 시작일** : **공적증명서류 시작일 인정**
2. **경력증명서의 시작일** > 공적증명서류의 시작일 : **경력증명서 시작일 인정**
❷ 경력기간 종료일
1. **경력증명서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의 종료일 : **경력증명서 종료일 인정**
2. 경력증명서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의 종료일** : **공적증명서류 종료일 인정**

   ② 실무교육 이수내역 확인
   - 실무교육을 받은 해에 한하여 실무경력 인정
   - 선임 이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연도가 연속적인 경우 그 사이에 있는 해의 경력도 인정

[유형2]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있는 경우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사실 증명서류(①~③ 중 택일)
   ① 국가기술자격증(수첩형)
   ②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 상장형 자격증은 90일 이내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진위여부 확인)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확인서
   ※ 자격 취득 사실확인서는 90일 이내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진위여부 확인)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2. 실무경력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됨
3. 2종류 이상의 자격으로 선임한 경우 경력기간 산정 방법
   - 2가지 이상의 선임경력이 동일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실무경력은 각각 경력기간을 인정한다. 이 경우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 이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형3]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갖춘 후 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있는 경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증명서류(①~③ 중 택일)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 또는 상장형)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선임자격을 갖춘 경우 : [유형 2] 준용 ☜클릭!
   - 소방공무원 경력(7년 이상)으로 선임자격을 갖춘 경우 : 경력(재직)증명서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 실무경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됨

[유형4] 학력조건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증명서류(사례1~4 중 택일)

(사례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 ☜클릭!

(사례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클릭!

(사례3) 상기 학과와 동일학과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클릭!

[사례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있는 경우

1. 학력 증명서류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 관련고시에 따른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됨
  ※ 졸업한 학과명이 관련고시에 따른 학과명과 다른 경우 동일학과인정서 필요 : (사례3) 참조 ☜클릭!
- 실무경력은 해당 학력 졸업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됨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사례2] 소방안전관련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졸업)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있는 경우

1. 학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②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 관련고시에 따른 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됨
- 실무경력은 해당 학력 졸업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됨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사례3] 관련고시 학과와 유사학과 졸업 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있는 경우

1. 학력 증명서류(①~④ 모두 제출)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별지 3호] 서식 ☜클릭!
   ③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별지 4호] 서식 ☜클릭!
   ④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는 해당 학교의 총장(또는 교무처장) 명의의 서류만을 인정하며, 학과장의 서명이 있는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함
  * 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의 확인 필요
- 실무경력은 해당 학력 졸업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됨

[유형5]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증명서류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졸업한 경우

1. 학력 증명서류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 한하여 인정됨
2. 실무경력 증명서류 : [유형1] 준용 ☜클릭!

【주의사항】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분야만 인정됨
  ※ 졸업한 학과명이 다른 경우 동일학과인정서 필요 : [유형4]의 (사례3) 참조 ☜클릭!

[별지 1호] 서식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구분	제출서류
[ ] 학력인정	[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또는 소방안전관련교과목 이수 후 졸업 증명서류 [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학위 취득 증명서류
[ ] 경력인정	[ ] 소방공무원 경력 증명서류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 ] 총괄재난관리자 경력 증명서류 [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 경력 증명서류 [ ] 의용소방대원 또는 경찰공무원 경력 증명서류 [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 소방대원 경력 증명서류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 소방대원 경력 증명서류 [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안전검측 업무 경력 증명서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 자격인정	[ ] 건축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증명서류
[ ] 학력 및 경력인정	[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또는 소방안전관련교과목 이수 후 졸업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학위 취득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증명서류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 자격 및 경력인정	[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증명서류 ※ 상기 증명서류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본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명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신청서 및 첨부된 증명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응시자격 심사 결과를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응시자격 증명서류(사진 포함)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증명사항	소속 및 직위	선임기간	경력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상기 경력기간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험응시 제출용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 확인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입증용임을 인지함은 물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물명 또는 상호 :

소재지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

대 표 자 : ㊞

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동일학과 인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학과	학 번	
졸업일자	년 월 일		학위번호		

※ 상기 응시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관련고시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과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청 고시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과, 소방시스템학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및 소방기계・전기・설비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상기자가 졸업한 (과)는 동일학과 인정범위의 소방관련학과 중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원) 학교장 또는 총장(교무처장) (직인)

붙임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별지 4호] 서식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기타 의견		

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교장) 확인 :　　직인

첨부 :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과목 확인용, 성적증명서 등) 1부.